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방부에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 설치 등〉

■ 박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241호)

2025. 2.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류 승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국방부에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 설치	3
2. 군부대 이전 절차 규정	6
3. 국방·군사시설 이전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12
※ 참고자료	15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2024년에 국회에 보고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현황	1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정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5.
3. 회부연월일 : 2024. 11.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부대를 포함한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심 내에 군부대가 위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으나 국방부 내부의 적정성 검토, 주민 반대로 인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군부대 이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군부대 주둔 지역의 발전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건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이전을 건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무총리에게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이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을 포함하여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에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하는 국방·군사시설의 실태조사에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절차를 보다 체계화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국방부에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 설치

□ 개정안은 국방부에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양여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신설></u>	<u>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련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u>
<u><신설></u>	<u>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설></u>	<u>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u>

현행	개정안
	<u>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

□ 개정안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도록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현행 국방부 훈령¹⁾을 통해 구성·운영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기부 대 양여 사업에 관한 심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련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함으로써 민간 분야의 의견 등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
- 1)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4조(심의위원회) ① 기부 대 양여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와 국방부 기부 대 양여 실무 심의위원회(이하 “실무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그 이외의 사항은 실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부 대 양여와 관련한 주요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합의각서(안)의 적격성 여부 검토 및 승인
 3. 합의각서의 중대한 변경에 관한 사항
 4. 합의각서의 효력상실에 관한 사항
 5. 기타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③ 심의위원회는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자 중 3인 이상과 외부 민간전문가 3인 이상으로 위원을 구성하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료 한다.
1.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심의안건 관련 국장
 2. 국방시설본부장
 3. 육군본부 공병실장, 해군본부 기획참모부장,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 공군본부 기획참모부장

다만, 동 심의위원회는 훈령을 근거로 이미 운영되고 있는 비상설 위원회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을 반영할 경우 일반적인 위원회 설치 규정 내용인 위원장을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위원회 주요 심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방부와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고²⁾, 국방부 훈령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이미 운영 중이므로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군부대 이전 절차 규정

- 개정안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군부대의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후속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3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건의에 의한 군부대 이전 절차) ①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부대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군사작전 및 군부대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군부대 이전후보지(이하 “이전후보지”라 한다)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이전을 건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이전후보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현행	개정안
	<u>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u> <u>⑤ 국방부장관 또는 이전을 건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 건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u> <u>⑥ 국무조정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이견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둘 수 있다.</u>

□ 개정안은 군부대(군 공항 제외³⁾) 이전 방식⁴⁾ 중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이전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기존 훈령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전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절차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군부대 이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부대 이전 절차와 관련하여 현행 법률 체계를

3) 군 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음

4) 군부대 이전 방식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방식과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른 ‘특별회계 이전’ 방식으로 구분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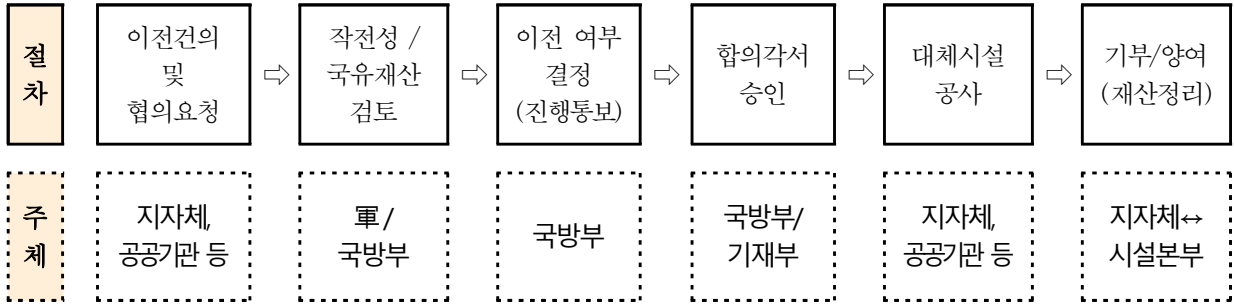
살펴보면, 동법 제12조⁵⁾를 통해 군부대를 포함한 모든 국방·군사 시설의 기부 대 양여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이전 절차는 국방부 훈령(「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현행 군부대 이전 절차와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부대 이전 절차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현행은 사업시행자(지자체, 공공기관 등)가 주체가 되어 이전 부지 및 부대이전 세부계획 등이 포함된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에서 검토 후 승인을 받게 되면 협의를 거쳐 합의각서를 최종 작성하고, 대체시설 공사 후 기부와 양여를 실시하여 부대 이전을 마무리하는 절차로 진행됨.
-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지역 내 군부대 이전을 희망할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군부대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를 직접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 현행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음.

5)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① 제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국방·군사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유지 또는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승인받은 해당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및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과 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 군부대 이전 절차]



[부대 이전 절차 비교표]

현행	개정안
지자체장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 (이전부지 및 부대이전 세부계획 포함) ↓ 작전성 및 사업성 검토 ↓ 합의각서 체결 ↓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 대체시설 공사 완료 ↓ 기부채납 및 양여 건의 및 승인	지자체장 이전 건의 ↓ 이전후보지 선정 ↓ 이전후보지 선정 결과 통보 (이전 건의 지자체장) ↓ 이전부지 선정(국방부장관) ※ 1년 이내 이전부지 선정 안될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견 조정 요청

□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의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된 규정과 유사하게 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군용항공기의 소음 피해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군 공항 이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제정된 「군공항이전법」과 달리 일반적인 군부대 이전에도 국방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하여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이전부지 선정에 난항이 있을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전이 필요한 지자체’와 ‘향후 이전될 지자체’ 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국무총리의 조정으로 단시간 내에 조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과, 「군공항이전법」에도 국무총리의 조정에 관한 내용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군공항이전법」과 개정안 비교표]

「군공항이전법」	개정안
[국방부 주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재량) ↓ 이전후보지 선정 ↓ 이전부지 선정	[국방부 주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의무) ↓ 이전후보지 선정 ↓ 이전부지 선정

□ 국방부는 이 전후보지를 국방부에서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부대 이전 요구 및 군부대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저해가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부동의하는 입장이며,

국무조정실은 각 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견조정 제한 및 이견조정 결과 불수용 등과 같은 추가 갈등 발생 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부동의한다는 입장임.

3. 국방·군사시설 이전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사항에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의3(실태조사 등) ① 국방부장관은 2년마다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실태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사유지에 설치된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1. ~ 3. (현행과 같음)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3. 유휴 국방·군사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u><신 설></u>	<u>4. 이전 사유 및 추진 경과 등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u>
4. 그 밖에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u>5. (현행 제4호와 같음)</u>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2년마다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태조사는 사유지에 설치된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국방·군사 시설에 관한 사항, 유휴 국방·군사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실태조사 포함 사항 비교]

현 행(법률 제14조의3제2항)	개정안(안 제14조의3제2항)
1. 사유지에 설치된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1. 사유지에 설치된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 지 아니하고 설치된 국방·군사시설 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 지 아니하고 설치된 국방·군사시설 에 관한 사항
3. 유휴 국방·군사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3. 유휴 국방·군사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사 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u>이전 사유 및 추진 경과 등 국방 · 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 항</u>
	5. 그 밖에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사 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개정안은 현행 실태조사 실시 사항에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도 추가하려는 것으로 국방·군사시설 중에서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국회가 정례적으로 명확히 보고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국방부는 현행법에 국방·군사시설사업의 현황 등에 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⁶⁾ 개정안의 내용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아 부동의한다는 입장임(참고자료 참조).

문 의 처
02)6788-5309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승인받은 해당 국방·군사시설사업 계획 및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과 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2024년에
국회에 보고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현황＞

□ 사업추진 현황 ('23.12.31. 기준)

○ 총괄현황

구 분	추진건수	기부재산(대체시설)	양여재산(기존시설)
내 용	32건	1조 8,319억원	1조 6,420억원

○ 세부사업 현황

순번	사업명	이전위치	기간	사업 시행자	진행단계	재산(억원)	
						기부	양여
1	53사단 127레이더 기지 이전	울산	'10-'26	울산시	인·허가/ 설계중	99	56
2	육군종합정비창 수집대 일부시설 이전	창원	'12-'24	창원시	재산정리	32	33
3	55사단 방공중대 이전	양평	'12-'24	양평군	재산정리	183	115
4	39사단 117연대 3대대(거제대대) 이전	거제	'13-'24	거제시	재산정리	534	419
5	1공수여단 불로리 훈련장 이전	인천→ 인천/서울	'14-'24	LH	대체시설공사	516	396
6	31사단 95연대 전탐감시소 이전	고흥	'16-'24	고흥군	재산정리	8	3
7	정보사 921정보부대 일부시설 이전	속초→ 속초/고성	'17-'24	속초시	재산정리	55	56
8	1사단 마정리 중대 및 임진라 장산리 소초 이전	파주	'17-'24	경기도	재산정리	101	55
9	35사단 106연대 2대대(전주대대) 이전	전주	'18-'27	전주시	인·허가/ 설계중	933	688
10	36사단 백호정사 이전	원주	'18-'24	원주시	인·허가/ 설계중	17	17

순번	사업명	이전위치	기간	사업 시행자	진행단계	재산(억원)	
						기부	양여
11	51사단 169연대본부, 3·4대대 이전	평택	'18-'24	LH	대체시설공사	1,562	1,422
12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세종	'18-'26	세종시	대체시설공사	2,537	2,125
13	5기갑여단 및 26전차대대 일부시설 이전	양주	'19-'24	양주시	대체시설공사	43	22
14	1175공병단 이전	부천→서울/ 인천/남양주	'19-'24	부천시	대체시설공사	2,260	2,093
15	9사단 966대대 1·2포대 및 11방공단 포진지 이전	파주	'19-'26	LH	인·허가/ 설계중	881	788
16	25사단 북진교 소초 이전	파주	'20-'25	파주시	인·허가/ 설계중	30	21
17	1군지여단 51탄약대대 일부시설 이전	고양	'20-'24	고양시	대체시설공사	18	1
18	55사단 사령부 일부시설 이전	용인	'20-'25	용인시	인·허가/ 설계중	16	22
19	11방공단 1발칸중대 방공진지 이전	고양	'20-'24	고양시	인·허가/ 설계중	46	24
20	8사단 정보대대 등 일부시설 이전	양주	'20-'24	경기도	대체시설공사	56	29
21	해병대 1사단 16연대 일부시설 이전	포항	'20-'24	포항시	대체시설공사	4	2
22	3사단 전차사격장 등 일부시설 이전	철원	'20-'25	철원군	인·허가/ 설계중	28	21
23	22사단 초도중대 이전	고성	'20-'25	고성군	인·허가/ 설계중	47	3
24	36사단 통일아파트 일부시설 이전	원주	'21-'24	원주시	재산정리	7	7
25	23경비여단 철벽사격장 이전	강릉	'21-'26	강릉시	인·허가/ 설계중	460	384
26	미 47보급소 및 캠프워커 일부시설 이전	대구	'21~26	대구시	인·허가/ 설계중	188	188
27	27사단 사창리비행장 이전	화천	'22~'25	화천군	인·허가/ 설계중	167	167

순번	사업명	이전위치	기간	사업 시행자	진행단계	재산(억원)	
						기부	양여
28	3보급단 및 507여단 등 이전	인천	'23~'27	인천시	인·허가/ 설계중	5,869	5,864
29	53사단 127여단 본부 이전	울산	'23~'26	울산시	인·허가/ 설계중	1,220	1,220
30	50사단 군인아파트 이전	대구	'23~'24	대구 달서구	인·허가/ 설계중	99	87
31	2공병여단 120공병대대 일부시설 이전	화천	'23~'24	강원도 도로 관리사 업소	인·허가/ 설계중	4	3
32	23경비여단 4대대 이전	삼척	'23~'26	삼척시	인·허가/ 설계중	496	270